

의안 번호	2199	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12. 1.(금) 안영호 의원 외 4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3. 12. 1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3. 12. 14.(목)

2. 제안설명 요지(안영호 의원)

-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증진시켜 재충전과 사기진작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및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과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을 강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후생복지사업의 명문화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확대(안 제6조)
 - 자녀 보육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운영 지원
 - 건강검진비(심리상담비 포함) 및 단체보험비 지원
 - 장례서비스 지원
- 나.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다듬어지지 않은 표현 등 용어 정비

4. 근거법규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증진시켜 재충전과 사기진작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및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